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(최수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69

발의연월일: 2024. 6. 10.

발 의 자:최수진·조정훈·임이자

구자근 • 박충권 • 박준태

안철수 · 김선교 · 김종양

박대출 · 김민전 · 최보윤

김위상 · 김 건 · 서명옥

안상훈 • 김소희 • 김장겸

의원(18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이 300억원 이상인 특정 신규사업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되, 예외적으로 일정한 절차를 거쳐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하고 있음.

한편 「과학기술기본법」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예비 타당성조사를 받아야 하는 사업이지만, 국가의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기초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(제38조제1항제3호 및 제38조의3 삭제).

법률 제 호
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8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. 제38조의3을 삭제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적용례) 제38조제1 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8조(예비타당성조사) ① 기획	제38조(예비타당성조사) ①
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가 500	
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	
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	
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	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	
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	
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	
실시하고, 그 결과를 요약하여	
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	
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	
한다. 다만, 제4호의 사업은 제	
28조에 따라 제출된 중기사업	
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	
억원 이상 수반되는 신규 사업	
으로 한다.	
1. • 2. (생 략)	1. • 2. (현행과 같음)
3. 「과학기술기본법」 제11조	<u><</u> 삭 제>
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	
4. (생 략)	4. (현행과 같음)
② ~ ⑥ (생 략)	② ~ ⑥ (현행과 같음)
제38조의3(국가연구개발사업 예	<u><삭 제></u>
비타당성조사의 특례) ① 기획	

재정부장관은 제8조의2, 제38조 및 제38조의2에 규정된 사항 중 「과학기술기본법」 제11조 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해서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 사에 관하여 위탁받은 과학기 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8조제2 항 및 제6항과 관련한 사항의 경우 사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.
-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적절하게 운영되는지 등을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.